

<u>대 부 재 산 증 명 서</u>	
제 호	
소 유 자 성 명	
주 소	
<u>대부재산의 표시</u> 	
위 재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증명합니다. 다만, 이 증명서는 동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. 다 음 "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."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 [인] 보 훈 지 청 장	

190mm×268mm인쇄용지(2급)60g/m²

84. 12. 26승인